2027) 전력거래사 필기 1차 정오표 [2026.11.04]

■ 1과목 경제학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해당 위치</th><th>오</th><th>정</th></tr>
<tr><td>134</td><td>2. 수요독점시장의 균형 조건</td><td>• 수요독점자의 최적 구매량은 아래 조건에서 결정된다.
→ ME = MC 즉, 한계지출(ME)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이 형성된다.
표)
<table>
<tr><th>항목</th><th>경쟁시장</th><th>수요독점시장</th></tr>
<tr><td rowspan="3">균형조건</td><td>P=MC</td><td>ME=MC</td></tr>
<tr><td>P=MC</td><td>ME=MC</td></tr>
<tr><td>P=MC</td><td>ME=MC</td></tr>
<tr><td>구매량</td><td></td><td></td></tr>
</table></td><td>• 수요독점자의 최적 구매량은 아래 조건에서 결정된다.
→ ME = MB 즉, 한계지출(ME)과 한계편익(MB)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수요독점자의 최적 구매량이 결정된다.
표)
<table>
<tr><th>항목</th><th>경쟁시장</th><th>수요독점시장</th></tr>
<tr><td>균형조건</td><td>P=MC</td><td>ME=MB</td></tr>
<tr><td>구매량</td><td></td><td></td></tr>
</table></td></tr>
</table>

■ 2과목 전력시장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해당 위치</th><th>오</th><th>정</th></tr>
<tr><td>207</td><td>2. 자발적 DR
③ 표내용</td><td>표)
경제성 DR
피크수요 DR
미세먼지 DR</td><td>표)
경제성 DR
피크수요 DR
~~미세먼지 DR 항목~~ (삭제 :2026.04.28.)</td></tr>
<tr><td>208</td><td>6. 수요자원시장의 운영</td><td>② “수요자원시장에 참여하는 모든(삭제) 고객”은 감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요반응자원 단위로 12월과 6월 중 불시에 감축시험(6월, 12월 1~2주차)을 시행하며, 감축시험 결과에 따라 불시에 감축 재시험(6월, 12월 3~4주차)을 시행하게 된다.</td><td>② “수요자원시장에 참여하는 고객”은 감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요반응자원 단위로 12월과 6월 중 불시에 감축시험(6월, 12월 1~2주차)을 시행하며, 감축시험 결과에 따라 불시에 감축 재시험(6월, 12월 3~4주차)을 시행하게 된다.</td></tr>
<tr><td rowspan="2">213</td><td>1.수요반응자원 시장의 개요
1) 전력수요 의무감축 DR(신뢰성DR)
표내용</td><td colspan="2">표) 주파수, 플러스 내용 삭제
<table>
<tr><td>주파수</td><td>~~계통주파수 유지 59.85Hz, 59.65Hz 이하로 하락시~~</td><td>전국</td><td>~~주파수연계 수요감축이 가능한 부하 10초 이내 응동, 10분간 전기사용량 감축~~</td><td>~~365일 09~18시~~</td></tr>
<tr><td>플러스</td><td>~~전력부하증대량 거래 (제주 신재생출력제어 발생 시)~~</td><td>제주</td><td>~~제한없음~~</td><td>~~365일 09~18시~~</td></tr>
</table></td></tr>
<tr><td>2) 자발적 수요감축 DR</td><td>① “자발적 수요감축”이란? 하루전발전계획의 가격결정에 따른 수요감축, 피크수요 저감을 위한 수요감축, 미세먼지 저감(삭제)을 위한 수요감축을 말한다.</td><td>① “자발적 수요감축”이란? 하루전발전계획의 가격결정에 따른 수요감축, 피크수요 저감을 위한 수요감축을 위한 수요감축을 말한다.</td></tr>
</table>

<table>
<tr><th>해당 페이지</th><th>해당 위치</th><th>오</th><th>정</th></tr>
<tr><td rowspan="2">214</td><td>2) 자발적
수요감축 DR
표내용</td><td>표)
경제성
피크수요
미세먼지</td><td>표)
경제성
피크수요
미세먼지 : 항목 일괄 삭제</td></tr>
<tr><td>3) 자발적
수요증대 DR
표내용</td><td colspan="2"><table>
<tr><th>종류</th><th>활용목적</th><th>지역</th><th>참여조건</th><th>가용시간</th><th>보 상</th></tr>
<tr><td>플러스</td><td>(제주)신재생발전기
출력제어 발생 시
수요증대</td><td>육지
(추가)
제주</td><td>하루전 입찰로
참여량 결정
→ 낙찰시 신재생 수요량
증대</td><td>매일
09~18시</td><td>실적급</td></tr>
</table></td></tr>
<tr><td>215</td><td>6) 기타 운영사항</td><td>① 전력수요 의무감축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당일 기준 경제성·피크수요, 미세먼지DR 낙찰 수요자원에 대해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 가능성 사전공지
② 피크수요DR, 미세먼지DR, 경제성DR 순서로 이전 프로그램의 유찰량을 다음 프로그램의 수요감축에 활용
③ 피크수요DR, 미세먼지DR 수요자원별 낙찰량은 필요량에 입찰량 비율(자원별 입찰량/전체 자원 입찰량)로 배분</td><td>① 전력수요 의무감축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당일 기준 경제성·피크수요 낙찰 수요자원에 대해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 가능성 사전공지
② 피크수요DR, 경제성DR 순서로 이전 프로그램의 유찰량을 다음 프로그램의 수요감축에 활용
③ 피크수요DR, 수요자원별 낙찰량은 필요량에 입찰량 비율(자원별 입찰량/전체 자원 입찰량)로 배분</td></tr>
<tr><td>229</td><td>2) 입찰서의 제출
(제12.4.2.2조)</td><td>1. 하루전발전계획의 가격결정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2. 피크수요 저감을 위한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요반응자원의 거래</td><td>1. 하루전발전계획의 가격결정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2. 피크수요 저감을 위한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3. (삭제 : 2026.4.28.)</td></tr>
<tr><td>243</td><td>12번 문제</td><td>12 수요반응자원시장 운영프로그램 중 자발적DR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경제성DR ② 피크수요DR
③ 미세먼지DR ④ 플러스DR</td><td>12 수요반응자원시장 운영프로그램 중 자발적DR에 해당하는 것은?
① 신뢰성 DR ② 플러스DR
③ 미세먼지DR ④ 피크수요DR</td></tr>
<tr><td>254</td><td>54번 문제</td><td>입찰대상은 자발적 수요감축(경제성·피크·미세먼지)에 한정되며, 주파수 하락에 따른 거래는 자발적DR이 아니므로 ④는 해당되지 않는다.</td><td>입찰대상은 자발적 수요감축(경제성DR·피크수요DR)에 한정되며, 주파수DR과 미세먼지DR의 거래는 자발적 DR이 아니므로 ③,④는 해당되지 않는다(미세먼지 DR 규칙개정으로 삭제).
정답 : ③,④</td></tr>
<tr><td>294</td><td>39번 문제
④번 지문</td><td>④ 정산기준은 예측오차율이 8% 이하인 경우 태양광·풍력 발전량에 3~4원/kWh의 정산금을 지급한다.</td><td>④ 정산기준은 예측오차율이 6% 이하인 경우 태양광·풍력 발전량에 3~4원/kWh의 정산금을 지급한다.</td></tr>
</table>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360	2. 공급인증서 발급신청 및 발급	3) 발급 수수료 ○ 공급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지침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1REC당 50원(부가세 포함시 : 550원)을 기준금액**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발급량과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3) 발급 수수료 ○ 공급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지침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1REC당 50원(부가세 포함시 : 55원)을 기준금액**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발급량과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374	21번 문제 지문 ②	② 해상풍력 : 2.5	② 해상풍력 (기본가중치) : 2.5
404	7번 문제 지문 ③	③ 제3 자 PPA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신압용전력(을) 고압 고객의 전력사용자만 참여할 수 있다.	③ 제3 자 PPA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산업용전력(을) 고압 고객의 전력사용자만 참여할 수 있다.

■ 3과목 전력계통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432	14번 문제 지문 ③	③ "운영예비력"이란 평상 시 안정적 주파수 유지를 위한 주파수제어예비력과 고장발생 시 주파수 회복을 위한 초속응성예비력, 1차예비력, 2차예비력, 제3차예비력을 말한다.	③ "운영예비력"이란 평상 시 안정적 주파수 유지를 위한 주파수제어예비력과 고장발생 시 주파수 회복을 위한 1차예비력, 2차예비력, 제3차예비력을 말한다.
433	18번 문제 지문 ①	① "운영예비력"이란 평상시 안정적 주파수 유지를 위한 주파수제어예비력과 고장발생 시 주파수 회복을 위한 초속응성예비력, 1차예비력, 2차예비력, 제3차예비력을 말한다.	① "운영예비력"이란 평상시 안정적 주파수 유지를 위한 주파수제어예비력과 고장발생 시 주파수 회복을 위한 1차예비력, 2차예비력, 제3차예비력을 말한다.
511	9번 문제 지문 ③	③ 계통 고장 시 발전력이 탈락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초속응성예비력, 1차 예비력, 2차 예비력, 3차 예비력이 필요하다.	③ 계통 고장 시 발전력이 탈락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파수회복을 위한 1차 예비력, 2차 예비력, 3차 예비력이 필요하다.
519	3) 예비력종류별 확보량 표내용	주파수제어(LFC) 개념 및 종류	

항목				확보량(MW)	확보수단	성능요건(유지)	
운영예비력	평상시	주파수제어예비력		700 이상	자동 (AGC+ESS)	5분 이내	30분 이상
	고장 시	주파수 회복 예비력	~~초속응성 예비력~~			~~2초 이내~~	~~10분 이상~~
			1차예비력	1,000 이상	자동 (GF+ESS)	10초 이내	5분 이상
			2차예비력	1,400 이상	자동 (AGC)	10분 이내	30분 이상
			3차예비력	1,400 이상	자동+수동	30분 이내	-

초속응성예비력 내용 삭제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528	19번 문제 지문 ③④	③ 경계 : 육지계통 하향주파수예비력이 700MW 이상, 1,200MW 미만(제주계통은 하향주파수예비력 20MW 이상, 30MW 미만) ④ 심각 : 육지계통 하향주파수예비력이 700MW 미만(제주계통은 하향주파수예비력 20MW 미만)	③ 경계 : 육지계통 하향예비력이 700MW 이상, 1,200MW 미만(제주계통은 하향주파수예비력 20MW 이상, 30MW 미만) ④ 심각 : 육지계통 하향예비력이 700MW 미만(제주계통은 하향주파수예비력 20MW 미만)
542	3번 문제 지문 ①	① 공급예비력이 4,500MW 이상 5,500MW 미만인 경우 '준비단계'로서 발전기 정지 일정 조정 및 공급능력 확보 조치를 수행한다.	① 운영예비력이 4,500MW 이상 5,500MW 미만인 경우 '준비단계'로서 발전기 정지 일정 조정 및 공급능력 확보 조치를 수행한다.
550	2. 뉴턴-랩슨 (newton-raphson) 방법	④ 현재 대부분의 전력조류계산, 최적조류계산(OPF) 및 계통해석 프로그램에서 기본 알고리즘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정상적인 초기값에서는 **수렴 특성과 정확성이 우수**하여 대규모 전력계통 해석에 적합하다.→ 따라서 현재 **전력조류 해석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558	04 신뢰도 유지 2) 발전기 출력변동률	① 석탄발전소 : 정격용량의 3.0%/mim 이상 ② 중유발전소 : 정격용량의 4.5%/min 이상 ③ 가스터빈 발전소 : 정격용량의 5.0%/mim 이상 ④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IGCC) : 정격용량의 3.0%/mim 이상	① 석탄발전소 : 정격용량의 3.0%/min 이상 ② 중유발전소 : 정격용량의 4.5%/min 이상 ③ 가스터빈 발전소 : 정격용량의 5.0%/min 이상 ④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IGCC) : 정격용량의 3.0%/min 이상
560	1번 문제 지문 ④	④ "운영예비력"이란 평상 시 안정적 주파수 유지를 위한 주파수제어예비력과 고장발생 시 주파수 회복을 위한 초속응성예비력, 1차예비력, 2차예비력, 제3차예비력을 말한다.	④ "운영예비력"이란 평상 시 안정적 주파수 유지를 위한 주파수제어예비력과 고장발생 시 주파수 회복을 위한 1차예비력, 2차예비력, 제3차예비력을 말한다.
577	3번 문제 지문 ②	② 발전사업자는 발전기 고장, 계통분리 등으로 인하여 계통주파수가 심각하게 저하될 경우 주파수 회복을 위하여 저주파수계전기에 의한 부하차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발전기 고장, 계통분리 등으로 인하여 계통주파수가 심각하게 저하될 경우 주파수 회복을 위하여 저주파수계전기에 의한 부하차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4과목 전기관련 법규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685	55번 문제 지문 ④	④ 수전설비 용량이 3만5천KVA 이상의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④ 수전설비 용량이 3만KVA 이상의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686	59번 문제	④ 금지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에 대한 공포 법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에 대한 조치)	④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전기사업 허가의 취소는 「전기사업법」 제23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703	3번 문제 답	정답 ④	정답 ③
715	3번 문제 해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며, 차관이 아니다. 또한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아니다. 또한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17	9번 문제	④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을 위한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을 위한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2번 문제 해설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이다.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이다.
786	21번 문제 지문 ①	① 최대부하 시현기간은 하계는 7월부터 9월까지, 동계는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한다.	① 최대부하 시현기간은 하계는 8월부터 9월까지, 동계는 12월부터 익년 1월까지로 한다.
796	5) 직접구매 수수료의 부과	전력거래소는 직접구매자에게 직접구매자의 진입에 따라 수반되는 정산·결제와 채권확보 및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충당을 위해 전력거래수수료를 전력거래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25.4.9.〉 → 제②항은 〈삭제 2025.4.9.〉	항목 삭제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801	9번 문제 2026년 7월 개정	**9**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구매자의 전력거래대금 중 배출권거래비용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에 대한 재정보증 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의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해당 전력거래에 대한 배출권거래비용의 최종결제일 익일까지 ② 매년 7월부터 익년 6월까지의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해당 전력거래에 대한 배출권거래비용의 최종결제일 익일까지 ③ 매년 9월부터 익년 12월까지의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해당 전력거래에 대한 배출권거래비용의 최종결제일 익일까지 ④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최초 전력거래일로부터 해당 전력거래에 대한 배출권거래비용의 최종결제일 익일까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3.4.1조 제6항에 따르면 배출권거래비용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최초 전력거래일부터 해당 전력거래에 대한 배출권거래비용의 최종결제일 익일까지이다.	**9**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구매자가 제공하는 수요반응자원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 매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입금일부터 최종입금일의 익일까지 ②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입금일부터 최종입금일의 익일까지 ③ 매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의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입금일부터 최종입금일의 익일까지 ④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입금일부터 최종입금일의 익일까지 전력시장운영규칙 따른 재정보증은 전력거래대금 중 재생에너지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 및 수요반응자원 정산대금을 제외한 일반 전력거래대금 보증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입금일부터 최종입금일의 익일까지이다. (2026년 7월 개정으로 배출권거래비용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은 삭제됨)
802	13번 문제 2026년 7월 개정	**13**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구매자의 전력거래대금 중 배출권거래비용 정산대금 및 재생에너지 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을 제외한 대금지급을 위한 재정보증에 대한 재정보증 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의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결제일로부터 최종결제일의 익일까지 ② 매년 7월부터 익년 6월까지의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결제일로부터 최종결제일의 익일까지 ③ 매년 9월부터 익년 12월까지의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결제일로부터 최종결제일의 익일까지 ④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결제일로부터 최종결제일의 익일까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3.4.1조 제5항에 따르면 전력구매자의 일반 전력거래대금에 대한 재정보증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결제일부터 최종결제일의 익일까지이다.	**13**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구매자가 제공하는 일반 전력거래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 매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입금일부터 최종입금일의 익일까지 ②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입금일부터 최종입금일의 익일까지 ③ 매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의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입금일부터 최종입금일의 익일까지 ④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입금일부터 최종입금일의 익일까지 전력시장운영규칙 따른 재정보증은 전력거래대금 중 재생에너지의무이행비용 정산대금 및 수요반응자원 정산대금을 제외한 일반 전력거래대금 보증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력거래에 대한 최초입금일부터 최종입금일의 익일까지이다. (배출권거래비용 정산대금 지급을 위한 재정보증 규정 삭제 : 2026년 7월 개정)

해당 페이지	해당 위치	오	정
833	9번 문제 지문 ④	④ 전력거래소 또는 한전은 일간 수요예측 결과 운영예비력이 5,500㎿ 미만으로 예상될 경우 산업부에 통보한 후, 상기 전력위기 단계별 조치 시행 준비 등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력거래소 또는 한전은 일간 수요예측 결과 운영예비력이 5,500㎿ 미만으로 예상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보한 후, 상기 전력위기 단계별 조치 시행 준비 등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76	3. 수요반응자원의 등록요건	② 수요반응자원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표준DR/H-표준DR, 중소형DR/H-중소형DR : 수도권, 비수도권 2. 제주DR/H-제주DR, 플러스DR : 제주권 3. 국민DR, 플러스DR : 육지권, 제주권	② 수요반응자원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표준DR/H-표준DR, 중소형DR/H-중소형DR : 수도권, 비수도권 2. 제주DR/H-제주DR, : 제주권 3. 국민DR, :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4. 플러스DR : 육지권, 제주권
883	2. 자발적 수요감축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2) 입찰서의 제출	2) 입찰서의 제출 ⋮ 1. 하루전발전계획의 가격결정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2. 피크수요 저감을 위한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요반응 자원의 거래	2) 입찰서의 제출 ⋮ 1. 하루전발전계획의 가격결정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2. 피크수요 저감을 위한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3. 삭제(규칙개정 : 2026년 4월)
885	3. 실시간 전력수요 의무감축에 따른 수요반응자원의 거래 2) 입찰서의 제출	2) 입찰서의 제출 수요관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수요반응자원의 자발적 수요감축에 대한 입찰서를 거래일 전일 11시까지 …	항목 삭제
	3) 전력거래 제한	① … 해당 수요반응자원의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감축시행일로부터 7일 후(실근무일기준) 까지 전력거래제한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전력거래소는 의무감축용량이 수요반응자원 별 최소 의무감축용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축재시험일의 10일 후(실근무일 기준)부터 전력거래기간 종료일까지 전력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	① … 해당 수요반응자원의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감축시행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전력거래제한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전력거래소는 의무감축용량이 수요반응자원 별 최소 의무감축용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축재시험일의 10일 후부터 전력거래기간 종료일까지 전력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